## 외래주사만

♪ N970 배란과 관련된 여성 불임증 ♪ KK010 피하또는근육내주사

청구메모» 타병원에서 배란유도 약제 가지고 와서 근육 주사 시행함

- 불임진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-36 호('04.7.1시행)에 따라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 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 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 세부
- 인정기준에 따라 급여비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.

  2. 또한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(체내ㆍ체외인공수 정 포함)시 소요되는 비용(행위, 약제 치료개료)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(별 표2)에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정하는 수가이며, 원내에서 주사제를 주사한 경우 에는 해당 수기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

3. 아울러 진찰료는 외래에서 화자를 진찰한 경우에 산

4. 따라서, 상기 규정등을 고려하시어 환자의 급여여 부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Q. 보조생식술 시술기관에서 처방받은 과배란유도제 등 주사약을 타병원에서 별도로 투약받는 경우 진찰료, 주사 수기료 등은 급여 적용되나요?

급여 약제(전액본인부담 약제 포함)를 투여받는 경 우에는 관련 주사료 등 행위료도 모두 급여 적용되 며, 이때 본인부담률은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 담률(30%-60%)을 적용합니다.